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4.19.] [총리령 제1270호, 2016.4.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에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추가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가 작업장 세척·소독 및 종사자 위생관리 등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27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4월 19일

국무총리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유가공업의 영업자”를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

업자”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고발·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되, 검거한 사람에 대한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은 전체 포상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제2항 단서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검거한 사람에 대한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은 전체 포상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중 “유가공업”을 “유가공업·알가공업”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알가공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알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정,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알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알가공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가. 도축업·집유업의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전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검증·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가. 도축업·집유업의 제2호라목9)를 12)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8)까지를 각각 2)부터 9)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 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

10)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제4호다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전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확인방법, 작업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검증·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제4호
라목8)을 13)으로 하고, 같은 목 4)부터 7)까지를 각각 7)부터 10)까지로 하며, 같은 목 1)부터 3)까
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4)[중전
의 2)] 및 5)[중전의 3)] 중 “경우”를 각각 “경우[6]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6),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재료·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자체검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	-------------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 11의 2. 개별기준의 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제4호의2 중 “유가공업”을 “유가공업·알가공업”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알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17년 12월 1일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7조제2항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